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4일, 김주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주영 의원)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소관 부처로서 마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용이한 현장 접근성을 통해 신속한 혐의발견 및 증거확보가 가능하게 되는바,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전반적인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용 이외의 비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